#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14

발의연월일: 2020. 9. 15.

발 의 자 : 아수진비·최종윤·서영교

이용빈 · 이병훈 · 이형석

노웅래 • 양이원영 • 위성곤

민형배 · 강민정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 6. 8.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의 물 관리정책 업무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감안하여 하천관리 업무를 제외한 물 관리정책 업 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바 있음.

그런데, 물 관리체계의 완전한 일원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하천 정비·보조 및 유수(流水)피해 예방 등의 업무도 환경부로 이전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주변에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자연재해의 이면에는 댐 등 홍수조절능력이나 하천 제방정비사업 등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하여 업무를 일원화하는 한편, 현행법에 홍수예방을 위한 업무를 추

가함으로써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정부의 물 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보전·관리를"을 "보전·관리와 홍수 예방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를 "환경부령으로"

로,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에"를 "하천관리청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의"를 "하천관리청의"로,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과"를 "하천관리청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과"를 "하천관리청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이"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

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환경부장관에게"

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홍수관리구역의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한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환경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렁으로"를 "환경부렁으로"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각각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이"로, "국토교통부장관을"을 "환경부장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부분 단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33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각각 "환경부렁으로"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환경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렁으로"를 "환경부렁으로"로,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의"를 "하천관리청의"로 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을 "하천관리청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5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은"을 "하천관리청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각각 "환경부장관은" 으로 한다.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68조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을 "하천관리청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을 "하천관리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각각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환경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하천관리청"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하천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

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의"를 "하천관리청의"로, "국토교통부장관의"를 각각 "환경부장관의"로,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이"를 "하천관리청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을 "하천관리청은"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각각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86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88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를 "환경부장관의"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을 "하천관리청은"으로 한다.

제91조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을 "하천관리청은"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를 "환경부장관의" 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를 "환경부장관의"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의"를 "환경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98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는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승계한다.
-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환경부장관의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각각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②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를 "환경부장관에게도" 로 한다.

③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의"를 "환경부의"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를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의"를 "환경부의"로, "국토교통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의"를 "환경부의"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를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⑥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의"를 "환경부의"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를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	4
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	
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	<u>환경부장관</u>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u>보전·</u>	<u>보전・</u>
<u>관리를</u>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	관리와 홍수 예방을
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	
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	
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2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	<u>환경부령으로</u>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 저 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 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 청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 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 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 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 청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 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지 (생 략)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 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

	<u>하천관</u> i	<u> </u>	
 제6조(다른 계) ①		- , ,	관
		하천관리	<u>]청</u> 
_ <u>-</u>			
		·하천된	 <u></u>
<u>청과</u>			
2			
  청과		<u>하천</u> 핀	 <u></u> 
 제7조(하천의 (현행과 같			1
	- <u>환경부장</u> -	<u> 관이</u>	

천을 말한다.

- 1. ~ 4. (생 략)
- ③ (생략)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 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 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 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를, 시 · 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 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 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u>국토교통부장관이</u>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 ⑥ <u>국토교통부장관</u> 또는 시· 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u>환경부장관은</u>
,
⑤ 환경부장관이
⑥ <u>환경부장관</u>

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u>국토</u>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생략)

제8조(하천관리청) ① 국가하천은 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

#### ② (생 략)

-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u>국토교통</u>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의의견을 들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있다.
  - ③ 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u>환경부령으로</u>
<u>.</u>
⑦ (현행과 같음)
제8조(하천관리청) ①
환경부장관이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 (현행
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
<u>0</u>
3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u>국토</u> 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관계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u>국토교통부장</u> 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 ③ (생 략)
  -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u>국토교통부렁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 ⑤ ⑥ (생략)
- 제12조(홍수관리구역) ①·② (생략)

<신 설>

			- <u>환</u>
경부장관으로부터			
<u>.</u>			
4			
		부장관	<u> </u>
<u>게</u>		F.	
제10조(하천구역의	_	능)	( <u>T</u> )
~ ③ (현행과 같 ④	· · ·		
4			
환경부렁으	으로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홍수관리구	역)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하천관리청은	홍수	관리구	<u> 9</u>
의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병	강하
기 위하여 그가	관리하	는 ㅎ	<u> </u>
에 대한 정비를	위해 1	노력하	<u> -</u> 여

# ③ (생 략)

-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① 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u>국토교통부령으로</u>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② <u>국토교통부장관이</u>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 ·수위·유량·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自重) ·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 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
  하천시설 중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
  을 설치한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
  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
  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

<u>야 한다.</u>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3조(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
지・보수 등의 기준) ①
  환경부령 <u>으</u>
 로
_
② 환경부장관이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
<u>환경부령으로</u>
② ~ ⑤ (현행과 같음)

장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 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 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 계를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 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 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또 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③ (생략)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생략)

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국토교</u> <u>통부장관은</u>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

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환경부렁으로</u>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① 환경부장관은
② 환경부장관은
,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u>환경부</u>
<u> 장관은</u>

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한다.

- ③ ④ (생 략)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 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 경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 ⑧ (생 략)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저 및 유지·보수) ① 하천관리청 (제28조제1항에 따라 <u>국토교통</u> 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u>국토교통부장관을</u>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 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u>.</u>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
· 
 ⑥ ~ ⑧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세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
<u>환경부장</u>
관이
환경부장관을

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④ (생 략)
-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 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 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 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u>국토교통부장관이</u> 고 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 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 1. ~ 4. (생 략)
- ⑥ ~ ⑨ (생 략)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환경부장관이</u>
1. ~ 4.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환경부장관은
<u>.</u>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u>국토</u>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u>환경</u>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	<u> 부장관은</u>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	
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	
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	② <u>환경부장관은</u>
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	
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u>국토</u>	환경부장관
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	<u>o]</u>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
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	
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	
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② (생 략)	하천공사) ①・② (현행과 같
	<u>о́</u>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③ <u>환경부장관은</u>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6

인가를 한 때에는 <u>국토교통부</u> <u>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⑦ ~ ⑩ (생 략)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저 가등의 의제) ① 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 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 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 음 각 호의 허가 · 인가 · 면허 · 승인 · 결정 · 해제 · 심의 · 신 고 · 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 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 •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 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 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 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

<u>환경부령으</u>
로
—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가등의 의제) ①
최거 버 기 귀
<u>환경부장관</u>

다.

- 1. ~ 21. (생략)
- ② (생략)
- ③ <u>국토교통부장관</u> 또는 하천 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 는 경우 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 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u>국토교통부장</u> 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 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1. 2. (생략)
- ⑤ (생략)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

1. ~ 2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
<u>.</u>
4
환경부장관-
1. •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u>환경부장관</u>

관리청은 제27조제7항ㆍ제28조 제4항ㆍ제30조제8항에 따른 준 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 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 검사 · 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 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 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부렁으로-----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 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 대할 수 있다. ⑥·⑦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⑧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환경부렁으로---다.

⑨ 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

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u>국</u>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 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생 략)
  - ②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u>국토교통부령으로</u>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 ③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 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u>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의</u>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 ② <u>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u> ② <u>하천관리청은-----</u>

환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
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령으로
<u> </u>
③
<u>환경부령으로</u>
<u>하천관리청의</u>
<u>.</u>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 관리청인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할 조 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 ③ (생략)

-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 용 등) ① (생 략)
  - ② <u>국토교통부장관은</u>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 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 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 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u>국토교통부령으로</u> 정 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
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u> </u>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u>환경부령으로</u>

-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② (생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 ③ <u>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u> 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생략)
-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 코로교통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이에 드는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제9조제1항(제27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국 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③ (생 략)
-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저
  -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u>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행과 같음)
③ <u>하천관리청은</u>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
환경부장관이
②
화
<u></u>
<u> 경부령으로</u>
,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u>환경부장관은</u>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 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이 익을 받는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 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 천의 유지·보수로 다른 시· 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 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 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 ·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 ③ (생략)

#### 1. ~ 3. (생략)

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 하천에 전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u>국토교</u> <u>통부장관이</u>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 ·도지사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② 환경부장관은
<u>.</u>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비용보조) <u>환경부장관은</u>
· 1. ~ 3. (현행과 같음)
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
1100エ(1 B B コ 11コ) ①
<u> 장관이</u>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 3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 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 62조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② (생략)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u>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u> 장관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하 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u>하천관리청은</u>
(10) <u>9000 00</u>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
분 등) ① <u>하천관리청</u>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다.

- 1. ~ 4. (생략)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 <u>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②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u> <u>부장관은</u>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u>.</u>
·
1. ~ 4.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
<u>하천관리청은</u>
 1. ~ 4. (현행과 같음)
② <u>환경부장관은</u>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변경, 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 2. (생략)

- ② <u>국토교통부장관은</u>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 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2조(하천관리원) ① 시·도지 사 또는 <u>국토교통부장관은</u> 하 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 <u>환경부장관은</u>
  1.•2. (현행과 같음)
② <u>환경부장관은</u>
 제72조(하천관리원) ① 환경부장관은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 한 사항은 <u>국토교통부령으로</u> 정한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 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u>국</u>토교통부 <u>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u> 시· 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 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u>국</u> 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관·환경부장관·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받은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관한 조사·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

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그 밖 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 할 수 있다.

- ② ~ ⑤ (생 략)
- ⑥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u>국토교통부령으로</u>정한다.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 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 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u>.</u>
· ② ~ ⑤ (현행과 같음)
(6)
<u>환경부렁으로</u>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
실보상) ①
환경부장관
0]
<del>'</del>
② 환경부장관

야 한다.

#### ③ • ④ (생 략)

-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 보상) ① 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u>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u> <u>장관의</u>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u>국토교통부장관</u> 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u>국토교통부장관의</u> 명령에 따라 <u>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이</u>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 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한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u>국토교통부장관</u> 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 업무와 토지등의 매수청구업무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③・④ (현행과 같음)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
보상) ①
<u>하천관리청의</u>
환경부장관
<u>9</u>
<u>환경부장관의</u>
<u> 하천관리청이</u>
(2)
하천관리청은
<u> </u>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u>환경부장관은</u>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u>국토교통부장관은</u>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 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 및 매수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3조(하천표지)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하천표지의 종류·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u>국토교통부령으로</u> 정한다.
-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하 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 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 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 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정하며, 이하

<u>.</u>
② <u>환경부장관은</u>
<u>.</u>
제83조(하천표지) ① (현행과 같
<u>♥</u> )
②
최거보러 스크
<u>환경부령으로</u>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u>국토교통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u>국토교통부장관이</u>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 제88조(협회의 설립) ①·② (생략)
  - ③ 협회는 <u>국토교통부장관의</u>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 ⑦ (생 략)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① <u>하천</u> 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 을 얻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 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u>환경부렁으로</u>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드)
<u>환경부장관이</u>
제88조(협회의 설립) ①・② (현
행과 같음)
③환경부장관의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① 하천
관리청은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설계도서, 그 밖에 필요한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수 있다.

#### ② (생략)

제91조(청문) <u>하천관리청 또는 환</u> 경부장관은 제69조 및 제70조 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 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u>국토교통부장관</u>
<u>또는 환경부장관의</u>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 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u>국토</u>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

<u>.</u>
② (현행과 같음)
제91조(청문) <u>하천관리청은</u>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u>환경부장관의</u>
<u>.</u>
②
환경
<u> 부장관의</u>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u>국토교통부장</u> 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 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6. (생략)

6의2. 제27조제5항에 따라 <u>국토</u> 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 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 보수 업무

7. • 8. (생략)

제98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u>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③ <u>환경부장관의</u>
1. ~ 6. (현행과 같음)
6의2 <u>환경</u>
<u> 부장관이</u>
7.・8. (현행과 같음)
제9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b>4</b>
<u>환</u> 경부장
<u>관</u>